

오산시공수의조례

제정 1989년 1월 1일 조례 제 80호

개정 1991년 3월 8일 조례 제239호

개정 2001년 4월 6일 조례 제6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 방역 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 ① 삭제 <2001. 4. 6>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 및 사망·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1. 4. 6>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 3. 8>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매월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6>

오산시공수의조례

제7조(여비) 여비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 및 [별표 9] 여비지급구분표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4. 6]

부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에 의거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1. 3. 8 조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4. 6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1. 4. 6>

업 무 일 지

진료 및 예찰일		년 월 일	수의사성명	
목(농)장 현 황	소 재 지			
	농(목)장명			
	성 명			
가축사육 현 황	축 종			
	사육두수			
진료 및 예찰결과	병 명			
	발생년월일			
	폐사두수			
	주요증상			
	조치사항			
특 기 사 항				
참 고 사 항				

오산시공수의조례

[별지 제2호서식]

(월) 공수의 업무보고서

받 음 : 오산시장
 참 조 : ○○과장

보 념 : (인)
 발송일자 : . . .

1. 공수의 근무상황

공수의 현황			진료 및 예찰지역	진료 및 예찰횟수	비 고
동물병원명	성 명	면허번호			

2. 가축진료 상황

축종별	진료두수	완치두수	폐사두수	진 료 내 역 (두)							폐 수 검안두수	
				계	소화	호흡	순환	생식	외상	기타		
계	두	두	두									두
한 우												
유 우												
육 우												
돼 지												
개												
가 금												
기 타												

3. 가축방역 (지원방역 제외)

예 방 주 사 (두)			가 검 물 송 부 (건)		
병 류 별	금월 실적	누계 실적	축 종	금월 실적	누계 실적
소 탄저·기종저			한(육)우		
소전염성비기관염			유 우		
개 광견병			돼 지		
돼지콜레라			닭		
돼지일본뇌염			개		
돼지전염성위장염					